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유아교육법」(법률 제17661호)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(법률 제17664호)이 개정(2020. 12. 22. 공포, 2021. 6. 23. 시행)됨에 따라,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교원의 자격검정을 위한 근거를 명확화하도록 개정(안 제1조)
- 나.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31조, 안 제31조제1호 및 제2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

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”를 “제22조의2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및 제21조의2”로 한다.

제31조의 제목“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를“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”를 “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및 제21조의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및 제22조의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22조의2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및 제21조의2----- -----.
제31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교육부장관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3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영 제19조---.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	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및 제21조의2----- -----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	2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및 제22조의2----- 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76